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문금주 · 권칠승 · 이학영
한민수 · 김문수 · 신영대
문정복 · 문대림 · 주철현
이정문 · 조인철 · 이광희
이병진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항제5호 단서 신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u>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u> <u>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p>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